

# 장애친화적 캠퍼스를 위한 교육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al Welfare Facilities for Disability-friendly Campus

김 학 철\*  
Kim, Hak Che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gn guidelines necessary for creating disability-friendly campuses. To this end, a literature survey and a survey on the current educational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were conducted. The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in writing and visiting evaluations on 19 campuses located in Gangwon-do(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the disabled has doubled since 2000, but it was found to be half of the enrollment rate based on school enrollme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gave up in the middle is increasing. This is due to an obstacle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welfare facilities. 2)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evaluation result was improved, but the absolute evaluation result was less than 70%, and it was not improved. 3)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termediate facilities, indoor facilities, sanitary facilities, guidance and other facilities, and unit space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them due to the lack of disabled parking marks, continuity of access roads, pedestrian safety passages, lifts, and rest areas for the disabled.

주 요 어 : 장애친화 시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시설

Keywords : Disability-friendly Facilities, Disabled University Student, Educational Welfare Facilities

### 1.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장애인들에게 대학은 단순히 학업의 지속성과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 이외에도 성인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환경의 변화로서 인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sup>1)</sup>와 교육기본법 제4조<sup>2)</sup> 등은 장애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로 인해 학습권에 대해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학습을 위한 활동 및 행위에 대해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5년 장애인 특별 입학제도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대학 입학 과 학습 편의성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등교육기관들은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 및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입학 제도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수는 증가하였고 요 근래 학령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도 포기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대학생활을 온전히 수행하

는데 필요한 입학전형제도, 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시설·설비 등에 대한 조화로운 환경 제공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애대학생들의 학습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동의 수월성, 단위 공간 활용의 편리성은 장애대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가 만점 기준 70%를 하회하고 있고 연차별 변화 추이도 답보상태임을 고려할 때 장애친화적인 대학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애대학생들의 교육복지지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후 장애대학생을 위한 장애친화적 캠퍼스 구성에 필요한 설계지침 수립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진행은 관련 문헌조사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시설의 실태 조사 및 평가,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의 대학 진학 추이와 기존 시행되었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 결과를 고찰하므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관련 외국 사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므로써 국내외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복지시설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설치기준 등을 관련 법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경동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Design, Kyungdong University, khc@kduniv.ac.kr)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실태평가 분석은 2020년 시행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중 강원도 소재 대학의 시설·설비 영역에 대한 평가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단위 공간 등 5개로 세분하여 진행하여 각 항목별로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평가는 1차로 대학에서 자체 평가 작성한 보고서와 첨부한 자료를 관련 설치 기준과 비교하여 시행하였고, 2차로 대학에 대한 방문조사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근래 연구 동향 중 최장순<sup>3)</sup>은 대학교육복지시설 중 옥외매개시설에 대해 연구하였고, 남해경 외 2인<sup>4)</sup>은 대학 기숙사에 대한 장애인 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민경석<sup>5)</sup>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용자의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연구하였고 최병주 외 4인<sup>6)</sup>은 대학교 장애학우 편의시설 실태 분석을 청주지역 대학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상기 연구들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용자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교육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내의 모든 교육복지시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본 연구 결과가 장애인화적인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환경의 변화

### 2.1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학생 수의 변화

1995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시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 수는 1995년 8개에서 2021년 131개로 확대되었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입학한 장애학생 수도 113명에서 891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교를 졸업하는 장애학생 수 대비 대학진학률도 2000년 28.9%에서 2021년 54.5%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취학연령의 모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과정까지 졸업할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가 대학의 전공과정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 경험하는 장애의 종류는 장애학생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건축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례라는 선발과정과 더불어 대학내에서의 접근과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의

3) 최장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캠퍼스 옥외매개시설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1), 2012.02, pp.21-28.  
 4) 남해경, 박창선, 박기택, 대학교 기숙사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6(4), 2004.11, pp.1-8.  
 5) 민경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시설·설비부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7(5), 2020.09, pp.24-31.  
 6) 최병주 외 4인, 대학교 장애학우 편의시설 실태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2012.12, pp.65-68.

확충이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Changes in Handicapped Students<sup>7)</sup>

연도	대학장애특별전형		장애학생 대학진학률	전체학생 대학진학률
	실시대학	학생수		
2021년	131	891	54.5%	73.7%
2015년	121	807	47.0%	70.8%
2010년	99	652	39.8%	79.0%
2005년	64	389	33.6%	82.1%
2000년	57	368	28.9%	68.0%
1995년	8	113	-	51.4%

### 2.2 우리나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현황

#### (1) 장애대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관련 법령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법령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students

법령	관련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전체
장애인 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장애인의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던 많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이 총괄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 종 지원과 의사소통수단,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7)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 및 입학 학생 수 : 해당연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참조, 교육부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대학진학률 : e-나라지표,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 참고, 2000년 자료는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참고하여 환산함.  
 - 전체학생 대학진학률 : e-나라지표, 취학을 및 진학을 참고,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ittsIdxSearch.do?idx\\_cd=1520&stts\\_cd=152001&freq=Y](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ittsIdxSearch.do?idx_cd=1520&stts_cd=152001&freq=Y)

에 명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리나라는 장애대학생에게 효율성있는 교육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되어 2022년까지 총 7차례 진행되었다.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평가 참여 학교는 2008년 192개 캠퍼스에서 2020년 2년제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한 423개 캠퍼스로 확대되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등 4단계로 분류하는데 평가가 거듭될수록 우수, 보통평가 대상 학교의 수는 증가하고 개선요망 대상 학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 점수 역시 상승하고 있어 전체적인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현황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우수 평가 학교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최근 평가 평균점수도 7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절대적인 교육복지지원 현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Educational Welfare Facilities for Handicapped University students<sup>8)</sup>

연도	참여 캠퍼스수	평가 결과 대학 수(%)				평균 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2020	423	39(9.20)	93(22)	177(41.8)	114(27)	70.9
2017	422	33(7.80)	68(16.1)	136(38.6)	158(37.5)	66.7
2014	368	22(5.90)	39(10.3)	107(29.1)	200(54.7)	61.2
2011	331	34(10.3)	24(7.3)	61(18.4)	212(64)	58.98
2008	192	20(10.4)	20(10.4)	20(20.9)	112(58.3)	-

특히 평가 항목 중 시설 설비분야의 점수는 50점 만점에서 2005년 33.90점, 2008년 33.48점, 2011년 33.55점<sup>9)</sup> 등으로 절대적인 평가 점수도 낮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가 대학 평가와 연계되지 못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성이 없고, 미미한 장애대학생 재학률에 의한 관련 시설 투자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3 교육복지지원 외국 사례<sup>10)</sup>

(1) 미국

미국은 재활법 504조 및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

애학생에게 친환경적인 대학환경을 조성해 왔다. 미국의 10개 주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유형으로 활동보조, 장애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장학금 지원, 진로/직업상담, 튜터링 등이 제공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사정시 장애학생들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는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학기준에 명시된 학업적, 기술적 역량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접근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2) 영국

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활서비스,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보조장구,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권리를 발표하여 대학 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 고등교육은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지역사회 내의 대학이나 지역 센터에서 직업교육의 확충, 학업지원, 상담서비스 등 각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일본

일본은 장애인 기본법 제14조<sup>11)</sup>에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기하고 있으며, 이 장애인 기본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시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장애인 기본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을 신속히 입안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본학생지원기구는 매년 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장애학생 수학기원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대학 입학 수험시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대학입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의 정상적인 수학과정을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수학기원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4) 핀란드

핀란드는 무상교육과 통합교육 시행으로 학생 선발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입시제도 역시 없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어느 대학이든 지망하고 입학할 수 있다. 장애인 지원법과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 지원을 전적으로 장애학생 소속 고등교육기관의

8) 2020년, 2017년, 2014년, 2012년, 200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참조, 교육부

9) 201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p58

10) - 미국, 영국, 일본 :김주영 외 4인,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9, pp.79-170. 요약 인용,

- 핀란드 : 박은혜 외 10인,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pp.132-138. 요약 인용

11) 장애인 기본법 제14조 : 국가 혹은 지방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혹은 장애의 정도에 대응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각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기관 내에서 학과나 단과대학별로도 다를 수 있다.

###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sup>12)</sup>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3가지 영역 중 시설·설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의 접근과 이동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대학생들의 단위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시설,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 3.1 매개시설

매개시설은 장애학생이 교문으로부터 교내 각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내 보도 및 접근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7개의 세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바닥마감 : 매개시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틈새가 최대 1cm이하로 평탄 마감, 맨홀 등의 덮개가 있는 경우 높이가 없도록 설치한다
- (2) 무단차 : 매개시설은 전체 구간을 무단차로 하고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1/18 이하로 설치한다.
- (3) 유효폭, 경사도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 이상 되어야 하고 전체 구간 기울기가 1/24(4%)이하가 되어야 한다.
- (4) 보행안전통로 : 보행안전통로와 차도는 재질과 색상이 구분되는 경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보행안전통로는 교내 모든 건물에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과의 교행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의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 보행 장애물은 설치하지 않거나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으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5) 점자블럭 : 매개시설 전체 구간에서 교사시설 출입구와 최단거리로 표준형 점자블럭을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매립형으로 설치 마감한다.
- (6) 장애인 주차장 위치 및 규격, 규모 : 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규정 설치비율의 100%를 초과하도록 주차구획 수를 확보한다. 주차구역은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구획하고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에 표기하며 주차장 노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 마감한다.
- (7) 장애인 주차구획 표식 및 안전보행통로 : 바닥과 입식으

로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하고 바닥에 휠체어 하차공간 표시를 설치한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보차분리된 폭 1.5m 이상인 안전보행통로를 평탄하게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Fig. 1. Evaluation items of intermediate facilities

#### 3.2 내부시설

장애대학생들의 교내 모든 교사시설 출입시 접근의 용이성과 수평, 수직 이동시 수월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접근성 : 교사시설 주출입구 접근시 높이차이가 없도록 한다.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기울기 1/18이하, 유효폭 1.5m 이상의 경사로를 한다. 경사로는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참을 설치, 미끄럽지 않는 바닥 마감, 양측면에 연속적인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출입구 규모 : 유효폭 1m 이상의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면 유효거리 1.5m 이상, 출입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0.8m~0.9m에 수평과 수직막대형 또는 L자형 손잡이를 설치한다.
- (3) 내부 출입문 : 단차가 없어야 하고 문의 유효폭 1.0m 이상, 모든 문의 전 후면 유효거리 1.5m 이상 확보한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0.8m~0.9m에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한다.
- (4) 복도 : 유효폭은 1.5m 이상을 확보하고 높이차이가 없고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을 마감해야 한다. 복도 벽면의 돌출물과 바닥면의 이동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5) 교사시설 내부의 경사로 : 유효폭 1.5m 이상,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기울기 1/12 이하,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 양측면의 손잡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 (6) 계단 : 유효폭 1.2m 이상, 철판 0.18m 이하, 디딤판 0.28m 이상,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럭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승강기 설치 : 2층 이상의 교사시설내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8) 승강기 규격 : 교사시설의 승강기,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규격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12)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편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



Fig. 2. Evaluation items of Indoor facilities

### 3.3 위생시설

(1) 장애인화장실 규모 및 접근성 : 전체 건물 층수의 50%에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별로 설치하고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통로 폭은 1.5m 이상 단차없이 확보한다.

(2) 대변기칸막이 : 출입문의 유효폭 0.9m 이상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칸막이 바닥은 폭 2m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한다.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형블럭을 0.3m 전면에 설치한다.

(3) 대변기수평손잡이 높이는 0.6m~0.7m,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 벽측 반대편 손잡이는 회전형, 손잡이 간격은 0.7m로 설치, 또한 변기측면에는 활동공간 0.7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으로 한다.

(4)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는 0.8~0.9m, 길이 0.5~0.6m,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55~0.65m, 소변기 수직손잡이 높이는 1.1~1.2m, 길이는 0.2~0.3m로 설치한다.

(5) 세면대 상단높이는 0.85m, 하단높이는 0.65m, 세면대 하부공간은 길이 0.25m~0.45m 이상 공간 확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또는 레버식으로 설치한다.



Fig. 3. Evaluation items of Sanitary facilities

### 3.4 안내 및 기타시설



Fig. 4. Evaluation items of Guidance and Other facilities

(1) 정보통신 이용 및 접근 :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보도 및 통로와 교사시설 등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전용석을 확보하여 한다.

(2) 교사시설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을 활용한 건물안내도를 설치하여야하고 비상시 시청각장애 대피용 시청각 경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전용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휴게실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 1.5m 이상 확보, 자동출입문 설치, 주출입구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럭 설치, 누워서 쉴 수 있는 침대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3.5 단위공간의 설치 기준

(1) 강의실 : 0.9m 이상의 내부통로 유효폭과 1.4m×1.4m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석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도서관 : 전체 열람석의 2% 이상 장애인 전용석을 설치하고 유효폭 1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 좌석과 나란히 배치하여 2곳 이상 분산 배치,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를 해야 한다.

(3) 강당 : 전체 관람석의 2% 이상 장애인전용석을 1.2m 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일반 좌석과 나란히 배치하여 2곳 이상 분산 배치하고 강당 등 무대는 무단차이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이하의 고정형경사로 또는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한다.

(4) 식당 : 구내식당의 접근, 메뉴 주문의 접근, 좌석의 접근, 배식대접근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체육관 : 체육시설의 샤워실 입구에 단차가 없고 샤워실 유효바닥 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으로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탈의실 수납공간을 적정높이에 설치하여 하부공간을 확보한다.

(6) 기숙사 : 전체 침실 수의 2% 이상 설치하고 주출입층 또는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 가능한 곳에 침실을 설치한다. 침실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하고 단차없이 설치한다. 침실내부에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하고 침대 높이 0.4m~0.45m,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해야한다. 침실내부 화장실 설치기준은 공용 장애인화장실 기준을 준용한다.

## 4. 장애대학생 복지지원시설 실태 분석

### 4.1 평가대상 학교들의 유형별 장애복지 현황 분석

평가는 강원도 소재 4년제와 전문대학 16개의 19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매개시설 평가는 7개의 세부항목, 내부시설 평가는 8개 세부항목, 위생시설은 3개의 세부항목, 안내 및 시타시설은 3개의 세부항목 그리고 단위공간은 6개의 세부항목 별로 설치 기준에 준하여 우수(3점), 적정(2점), 미흡(1점), 미설치(0점)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그 합계에 해당하는 환산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각 평가대상 학교들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대학생은 최소 0명에서 최대 63명(재학율 0.47%)이고 재학률은 0%에서 최대 1.81%로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특례입학전형의 경우 전문대학 중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전무하였고 4년제 대학 중에서도 대체로 국공립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

Table 4. Status and Evaluation Results of Disability Welfare in Schools Subject to Evaluation

연번	유형	운영	지리적 위치	재학생수	장애재학생수(%)	장애특 별전형	장애학생지원센터	매개시설 (8점)	내부시설 (12점)	위생시설 (8점)	안내 및 기타(3점)	단위공간 (6점)	총계 (37점)
1	4년제	사립	평지형	6856	12(0.18)	x	o	6.6	10.0	6.3	1.7	2.9	27.5
2	4년제	국립	평지형	5128	5(0.10)	o	o	6.8	11.4	5.5	1.9	5.3	30.9
3	4년제	국립	평지형	2033	8(0.39)	o	o	6.6	11.4	7.1	2.4	4.6	32.1
4	4년제	국립	산지형	-	-	-	-	6.1	11.8	6.0	2.5	4.2	30.6
5	4년제	국립	평지형	5360	5(0.09)	o	o	6.1	8.6	5.7	1.9	4.3	26.6
6	4년제	국립	평지형	13270	63(0.47)	o	o	6.6	8.5	5.8	1.9	4.0	26.8
7	4년제	사립	평지형	6248	21(0.34)	x	o	4.7	7.8	3.2	1.8	3.2	20.7
8	4년제	사립	평지형	6905	25(0.36)	o	o	6.4	11.3	6.3	2.1	4.9	31
9	4년제	국립	평지형	1294	12(0.93)	o	o	7.3	7.8	6.2	2.1	4.9	28.3
10	4년제	사립	평지형	3156	2(0.06)	x	x	7.2	10.3	5.6	1.5	4.5	29.1
11	4년제	사립	평지형	7568	14(0.18)	o	o	6.4	9.3	4.5	1.9	4.0	26.1
12	2년제	사립	산지형	2330	4(0.17)	x	o	3.2	4.6	1.0	1.2	3.2	13.2
13	2년제	사립	산지형	415	0(0)	x	x	4.1	4.0	4.9	1.8	2.6	17.4
14	2년제	공립	평지형	552	10(1.81)	x	x	6.1	7.9	6.0	2.3	3.3	25.6
15	2년제	사립	산지형	919	7(0.76)	x	o	3.6	6.9	2.0	1.6	2.8	16.9
16	2년제	사립	평지형	736	1(0.14)	x	o	4.7	9.6	5.3	0.9	2.2	22.7
17	2년제	사립	산지형	777	6(0.77)	x	o	5.7	7.0	6.1	1.7	3.3	23.8
18	3년제	사립	산지형	425	0(0)	x	x	5.4	11.2	6.7	1.9	4.3	29.5
19	2년제	사립	평지형	2761	3(0.11)	x	o	6.6	10.0	4.6	1.4	3.2	25.8
평균								5.80	8.92	5.20	1.82	3.77	25.51

타났다. 장애 대학생의 재학 중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지원센터 운영은 4년제 대학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국공립대학일수록 장애특례입학제도 및 장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대학생의 입학과 재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실태 평가 결과는 평균 68.9%(37점 만점에 평균점수 25.51)로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유형별로 장애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평균 점수가 28.15점으로 전문대학 평균 점수 21.8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대학의 평균점수가 25.6점으로 사립대학 평균 점수 23.64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4년제 국공립대학의 장애복지시설의 확충 정도가 2년제 사립대학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평가대상 학교들의 복지지원시설 실태 분석

##### (1) 매개시설

매개시설은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접근성의 수월성과 상관관계가 많은 것으로 평가결과 평지형 캠퍼스가 6.32점으로 산지형 캠퍼스 5.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부평가항목 7개 평가 결과 매개시설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로 틈새없이 밀실하게 마감되어 있고 교문에서 각 교사 시설까지 점자블럭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자 주차구획은 적절한 크기 및 적정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각 교사시설의 주출입구나 부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문에서 각 교사시설까지의 접근로의 경사가 4%를 초과한 곳이 많아 장애

학생의 접근 수월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안전통로(보도)는 도로와 경계석 등으로 분리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도우미 되고 있으나 각 교사시설까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곳이 많고 보차 교행구간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학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 주차구획의 바닥 및 입식표시 중 일부만 설치한 학교가 많았고 특히 주차구획부터 교사시설의 출입구까지의 안전통로 확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사는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성이 있어 접근로의 경사를 변경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장애학생 면담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로의 경사도는 장애전용 주차장에서 각 교사시설까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able 5.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items of Intermediate facilities

매개시설 세부 항목 평가 결과(8점)						
바닥마감	무단차	유효폭	보행안전	점자블럭	주차위치	주차표시
(1)	(1)	경사도(1)	통로(2)	(1)	구획, 규모	안전통로
					(1)	(1)
0.9	0.64	0.68	1.38	0.75	0.88	0.66

##### (2) 내부시설

내부시설은장애대학생의 교사시설 진출입 접근성 및 교사시설 내부에서 수평 수직 이동의 수월성에 대한 8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평가 분석한 결과 총점 12점의 74.3%인 8.9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사시설 내부 출입문의 구조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복도의 벽면 돌출물 및 보행 장애물 등의 설



치가 없어 장애대학생의 수직이동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시설의 주출입구의 크기 및 형태도 장애 대학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시설 주진입시 무단차 계획 등을 통한 접근의 수월성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교사시설 내부에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의 구조 등은 설치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이동에 사용되는 계단의 구조 및 형태 등도 설치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나 계단의 시작과 끝점, 휴식침의 시작과 끝점에 설치되어야 할 점형블럭이 미설치된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또한 실내에 에스컬레이터와 리프트가 설치된 경우는 없었고 승강기 설치가 전체 교사시설 대비 70%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의 수직이동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승강기임을 고려할 때 추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items of Indoor facilities

내부시설 세부 항목 평가 결과(12점)							
접근성 (1)	주출입구 (1)	내부 출입구(1)	복도 (1)	내부경 사로(1)	계단 (1)	수직이동 (5)	승강기 규격(1)
0.77	0.87	0.90	0.95	0.75	0.74	3.53	0.53

### (3) 위생시설

교사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자전용 화장실에 대해 실태 평가한 결과 8점 만점의 65%인 5.2점을 나타내어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시설 신축부터 설치된 장애자용 화장실의 경우는 대체로 시설 확충이 양호하나 기존에 없던 화장실을 추후 위생기기 설치로 확보한 경우 대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전용 화장실은 대체로 1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상부층 학습자의 화장실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실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된 경우가 부족하였다. 또한 화장실의 점자블록은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설치하여 출입을 분리하여야 하나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이 아닌 후면 레버 또는 버튼식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실 사용 여부 식별 표시, 접근 통로의 유효폭 확보, 접근시 무단차 계획, 대변기칸막이의 바닥면적, 위생기구의 수평 수직 손잡이 등의 위생기기 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items of Sanitary facilities

위생시설 세부 항목 평가 결과(8점)		
화장실 규모 및 접근성(3)	대변기 칸막이 구조(3)	위생기기 적정성(2)
2.06	1.86	1.34

### (4) 안내 및 기타시설

장애대학생의 교내 정보통신시설 접근 및 이용의 수월성과 비상시에 장애대학생을 안내할 수 있는 시설, 장애 대학생을 위

한 휴게실에 대한 시설을 실태 평가할 결과 3점 만점에 63%인 0.67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내 및 유도시설 중 교사시설의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가 매우 부족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비상시 유도장치인 시·청각 경보시스템의 설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 전용 휴게실은 대체로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내 보건센터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용실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items of Guidance and Other facilities

안내 및 기타시설 세부 항목 평가 결과(3점)		
정보통신 접근,이용(1)	안내 및 유도시설(1)	휴게실(1)
0.85	0.36	0.67

### (5) 단위 공간

강의실을 비롯한 6개 단위 공간에 대한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시설별로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간별 보완 사항이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9.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items of Unit space facilities

단위 공간 시설 세부 항목 평가 결과(6점)					
강의실(1)	도서관(1)	강당(1)	식당(1)	체육관(1)	기숙사(1)
0.74	0.78	0.4	0.89	0.30	0.72

강당은 장애대학생의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가 부족하였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체육관내 샤워시설 역시 거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실내에서 학습에 필요한 내부통로 유효폭 확보,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강의실 및 도서관내의 장애대학생 좌석 확보 현황 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대학생 좌석을 한 곳에 배치한 경우가 많았는데 2곳 이상 분산배치하고 비장애학생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장애 특례 입학제도와 대학내 장애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힘입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학업 중도 포기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례입학제도에 의해 입학하였으나 장애대학생들의 대학내 이동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의 수월 및 단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이래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취학대상 기준 진학률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시설의 접근성, 편의성에 기인한 학습과정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대학생 편의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확충과 기존 시

설에 대한 보수가 장애대학생 진학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는 평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육복지지원 실태가 양호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절대적인 평가 결과는 만점의 70%를 하회하고 있고 특히 시설·설비 결과는 답보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학의 입학특례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은 특례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특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의 장점에 대한 외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4) 평가 대상학교 유형별로 특례입학제도 운영 여부, 장애지원센터 운영 여부, 실태평가 점수 등을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학습 용이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4년제 대학이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학교 중 전문대학은 전부 특례입학제도 미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시설 확충 강제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을 권고가 아닌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5) 교육복지시설 중 매개시설 평가 결과는 평지형 또는 산지형 등 대학 캠퍼스의 입지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의 자가용 통학을 고려할 때 장애인용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의 매개시설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시설을 통한 각 시설과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특히 보차 교행구간에서의 고원식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용주차구획의 위치의 적정성과 규모의 접합성 등은 바람직하나 주차구획의 입식 및 바닥 표시가 일부 부족하므로 적정 규격 및 위치에 관련 표식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특히 주차구획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보행안전통로 확보는 매우 부족하므로 보차분리된 폭 1.5 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내부시설 중 수평이동에 필요한 복도공간에 대한 계획과 주출입구, 내부출입구 구조, 계단 구조 등은 바람직하나 계단의 점형블럭 설치와 수직이동에 필요한 승강기의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의 점형블럭은 계단의 시작점과 종료점, 계단참의 모서리 등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승강기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주로 1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층으로 화장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점자 표식은 일반화장실 표식과 나란히 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대변기 레버는 점진적으로 광감지식이나 레버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시설 중 촉지도를 활용한 안내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교사시설의 출입

구 중 장애대학생이 출입가능한 출입구 주위에 촉지식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고 유사시 시·청각 장애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시청각유도시스템 확충도 필요하다.

9) 단위공간에 대한 평가 결과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식당 등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당의 무대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당 접근성은 별도의 이동식 계단을 구비하여 필요시 이동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실, 도서관, 강당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석은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비장애학생 친구들과 동석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곳에 분산하여 비장애석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비장애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장애친화적 캠퍼스 구현은 장애대학생의 편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대학생도 같이 편리해질 수 있다는 폭넓은 시야로 대학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시설투자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주영 외 4인,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남해경, 박창선, 박기택, 대학교 기숙사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4), 2004.11.
3. 민경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시설·설비부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7(5), 2020.09.
4. 박은혜 외 10인,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5. 최병주 외 4인, 대학교 장애학우 편의시설 실태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사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2012.12.
6. 최장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캠퍼스 옥외매개시설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1), 2012.02.
7.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편람, 2020.
8. 교육부, 2020년, 2017년, 2014년, 2012년, 2009년 연도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main.do>

접 수 일 자 : 2022. 09. 17  
초 심 안 료 일 자 : 2022. 10. 28  
재심(1차) 완료일자 : 2022. 11. 01  
게 재 확 정 일 자 : 2022. 11. 02